

1928 ; 75 : 1334 Cited in ref 8

10. Olson WA et al. J Natl cancer Inst 1973 ; 51 : 1993 Ibid

11. Powers MB et al. Tox Appl pharm 1975 ; 33 : 171 Ibid

12. Ward JM, Haberman RT. Lab Invest 1974 ; 30 : 392 Ibid

13. Ward JM, Haberman RT. Buil Soc Pharmacol Env Path 1974 ; 2 : 10 Ibid

14. Ott MG, Scharnweber HC, Langner RR. Unpublished report submitted to NIOSH by the

Dow Chemical Co 1977 Ibid

15. Stanford Reaserch Institute. Report submitted to NIOSH under contract No DCD-99-74-31 1976 Ibid

16. Amir D, Volcani R. Nature 1965 ; 206 : 99 Ibid

17. Alumot E et al. Poult Sci 1968 ; 47 : 1979 Ibid

18. Short RD, Jr et al. Report No. EPA-560/6-76-018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ffice of Toxic Substances 1976 Ibid

19. Rowe VK et al. Arch Ind Hyg Occup Med 1952 ; 6 : 158



관계법규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참고서

#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스텐레스(주) 생산주임이 야근직원의 약을 사러나가 음주후 귀사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88-236호 88. 8. 16. 기각)

## 재 결 서

### 재 심 청 구 인

주소 : 경북 월성군 외동읍 임실2리

성명 : 김 ○ ○

### 원 처 분 을 받은 자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성명 : 김 ○ ○

소속 : ○○스텐레스(주)

### 원 처 분 청

부천시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재심사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 취지는 부천시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피재자 김○○(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스텐레스 스틸공업(주) 김포공장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 1988. 4. 16. 21 : 45경 생산과에서 야간 근무 근로자 “이○○”가 배가 아파 약을 사달라

고 하자 당직근무자인 피해자는 약을 사다 주겠다고 약국에 가려하자 공무조장 김○○이 자기도 배가 아프니 약을 사먹고 오겠다고 같이 동료 근로자의 오토바이를 빌려 피해자가 운전하고 김○○은 뒤에 탄 채 경비실에 통고한후 동일 22:00경 정문을 출발 약 2키로미터 떨어진 김포군 월곶면 갈산리 소재 ○○약방에서 소화제(까스명수와 웨스탈)를 구입한후 근처 술집인 ○○○○ 쌀롱에 들러 외상술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쌀롱종업원 진술) 부근 ○○다방에 들러 “위스키”를 마신후 외상 싸인(다방주인 진술)을 하고 또다시 부근 ○다방에 들러 외박 아가씨를 요구 거절하자 동일 23:20경 다방을 나간후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다방주인 진술) 익일(4. 17일) 01:30경 회사로 돌아오는 도로 옆 전주에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김○○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 회사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케 되었으며 청구인은 1988. 4. 21. 원처분청에 진정서 제출 및 상병명 “1) 중증뇌좌상외6”으로 동년 5. 3 요양신청을 하여 원처분청에서는 그 사실을 조사한바 피해자와 김○○은 업무를 이탈한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로 판단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당직자로서 당직근무중에 부하직원이 아프다는데 약을 사러 갔다오다 일어나 재해를 사적 이유로 업무의 재해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심사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 및 이유서(1988. 7. 16. 김○○)
2. 원처분청 의견서(1988. 7. 23. 부천지방노

동사무소장)

3.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88. 6. 24. 박○○)
4. 요양신청서 사본(1988. 4. 19. 김○○ 대표회사대표)
5. 소견서 사본(1988. 4. 21. 성모자애병원장)
6.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사본(1988. 5. 16. 조사자 행정주사보 박○○)
7. 진정사건처리종결통보사본(1988. 5. 17.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8. 진술조서사본(1988. 5. 2. 회사 총무과장 유○○)
9. 출장복명서(첨부 1) ○○○○ 룬쌀롱 종업원 양○○, 2) ○다방 주인 이○○ 진술서, 3) ○○다방 주인 강○○ 진술서, 4) ○○다방 김○○ 외상싸인 등 각 사본(1988. 5. 2. 행정주사보 박○○)
10. 사망사고 원인조회 결과 회보(1988. 5. 7. 김포경찰서장)
11. 경비근무일지 사본(1988. 4. 16. 분)
12. 기 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대, 피해자는 ○○스텐레스 스틸공업(주) 김포공장 소속 근로자(생산주임)로 근무중인 1988. 4. 16. 21:45경 야간근무 근로자 이○○가 배가 아파 약을 달라고 하자 당직근무자인 피해자가 약을 사다 주겠다고 약국에 가려하자 공무조장 김○○이 자기도 배가 아프니 약을 사먹고 오겠다고 같이 동료 근로자의 오토바이를 빌려 피해자가 운전하고 김○○은 뒤에 탄 채 경비실에 통고한후 동일 22:00경 정문을 출발 약 2키로미터(오토바이로 왕복 약 15분 소요됨) 떨어진 김포군 월곶면 갈산리 소재 ○○약방에서 소화제(까스명수와 웨스탈)를 구입한후 근처 술집인 ○○○○ 쌀롱, ○○다방, ○다방 등을 들린후 동일 23:20경 이후 행방이 불명한 상태에서 익일인 4. 17. 01:30경 회사로 돌아오는 도로 옆 전주에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김○○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전○○)이 발견, 회

사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상병명 “1) 중증뇌좌상의 6”으로 원처분청에 요양신청한바 원처분청에서는 그 사실을 조사한바 피재자 및 김○○(사망)은 업무를 이탈한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로 판단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직자로서 당직근무중에 부하직원이 아프다는데 약을 사러 갔다오다 일어난 재해를 사적 사유로 업무의 재해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므로 이점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 피재자(생산주임)는 1988. 4. 16. 당직근무자로서 동일 21:45경 야간근무중인 생산과 근로자 “이○○”가 배가 아파 약을 달라고 하자 피재자는 약을 사다 주겠다고 약국에 가려하자 공무조장 김○○도 배가 아프니 약을 사먹고 오겠다고 동료 근로자의 오토바이를 빌려 피재자가 운전하고 김○○은 뒤에 탄 채 경비실에 통고한후 동일 22:00경 정문을 출발 약 2킬로미터(오토바이로 왕복 약 15분 소요됨) 떨어진 김포군 월곶면 갈산리 소재 ○○약방에서 소화제를 구입한 사실 등을 인정한다.

둘째 : 피재자는 전시 ○○약방에서 소화제를 구입한후 근처 술집인 ○○○○ 쌀롱에 들러 외상술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쌀롱 종업원 양○○ 진술) 부근 ○○다방에 들러 “위스키”를 각각 두잔씩 마시고 외상짜인(다방주인 강○○ 진술)을 하고 다시 부근 ○다방에 들러 외박 아가씨를 요구, 거절당하자 동일 23:00경 다방을 나간후(당시 두 사람이 술에 취해있었다는 ○다방주인 이○○ 진술)의 행동은 알 수 없음이다.

셋째 : 1988. 4. 17. 01:30경 사고 지점을 지나가던 주민(경찰회신 공문에 의함 전○○)이 목격한바 오토바이가 전주에 충돌하여 한사람(김○○)은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한사람(김○○)은 중상을 입고 신음하는 것을 회사에 신고하므로 회사에서는 병원으로 후송 상병명 “1) 중증 뇌좌상의 6”으로 요양중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네째 : 1988. 5. 2. 회사 총무과장 유○○의 진술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향시 구급약을 비치하

고 있으며(당시 당직자인 피재자도 구급약 비치를 알고 있었다고 함) 당직자는 근로자의 구급약 요구시에는 언제든지 지급한다는 것이며 공장에서 ○○약방까지의 거리는 약 2킬로미터로서 오토바이로 왕복소요시간은 약 15분이라고 함.

다섯째 : 1988. 5. 7. 김포경찰서장의 “사망사고 원인조회 결과 회보”에 의하면,

1) 사고일시 및 장소(발견) : 1988. 4. 17. 01:30경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고양리 산 35번지 앞 노상

2) 개요 : 변사자 등은 1988. 4. 16. 22:00경 김포군 월곶면 고양리 소재 ○○스텐레스 공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중 생산주임인 김○○이 운전하는 80cc 오토바이 뒤에 승차하여 월곶면 오리경부락에 약을 사러간다고 나간 후 소식이 없던중 익일 01:30경 현장을 지나던 전○○이 오토바이와 사람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변사자는 위 오토바이 뒤에 승차하여 오리경쪽에서 석경리쪽으로 주행하다 좌회전 커브길을 돌지 못하고 우측 노변으로 이탈되면서 동 오토바이안 부분으로 전주를 충돌, 변사자의 턱이 전주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뇌좌상 및 뇌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임.

3) 가해자 유무 : 사고 당시 동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김○○은 동 사고로 뇌수술을 받고 성모자애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중임.

이상의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상 여부에 대하여 종합 심리하건대, 피재자의 경우 1988. 4. 16. 당직근무자로서 동일 21:45경 야간 근무중인 생산직 근로자 이○○가 복통으로 인하여 약을 달라고 하자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구급약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또한 회사에 구급약이 비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사실상 약을 구입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약국에서 소화제를 구입하여 바로 귀사하였다고 한다면 회사 경비일지의 기록상 당일 22:00에 정문을 출발 순로로 약을 구입하여 왕복하는데 약 20분 이내에서 소임이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재자와 공무조장 김○○(사망)은 특별

한 사유없이 동행한 사실이나 또한 순로를 이탈하여 ○○○○ 쌀통, ○○다방 및 ○다방 등을 배회하면서(특히 음주 등) 동일 23:20경 ○다방을 나간후 익일(4. 17일) 01:30 사고가 발생(추정)한 점 등으로 보아 도중 소요시간이 20분이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귀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재자 등은 1시간 내지 3시간 정

도의 순로 이탈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업무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자료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를 대리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철강(주) 조관공이 하역작업을 하던 트럭에서 냉동생선 한박스를 가지고 오다 “우족부 압괴 마멸창”이 발생한 경우**

(88-276호 88. 9. 19. 취소)

**재 결 서**

재심청구인

주소: 부산직할시 남구 용희동

성명: 강 ○ ○

소속: ○○철강공업(주)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상 동

성명: ”

소속: ”

원 처 분 청

부산지방노동청장

주 문

부산지방노동청장이 1988. 6. 24. 자 “강○○”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 취지는 부산지방노동청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8. 6. 24.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청구인은 ○○철강(주)에 1988. 4. 11.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88. 5. 21. 15:00경 작업장에

서 교육을 받다가 해안가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트럭에서 냉동생선 한박스를 가지고 작업장에 돌아 오다가 작동중이던 기계에 우측발등이 절단되어 상병명 “우족부 압괴 마멸창(절단상태, 족근골간관절부 이하)”으로 ○○병원에서 요양중인 자로서 원처분청에 요양신청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피재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작업장이 아닌 해안도로에 있는 트럭에서 생선박스를 가지고 온 것은 업무에 수반하는 필연적 또는 합리적 행위가 아니고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의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고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생선박스를 가지고 왔으며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작동중인 기계에 의하여 피재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88. 8. 24. 강○○)
2. 원처분청 의견서(1988. 8. 22. 부산지방노동

청장)

3. 심사관 결정서 사본(1988. 8. 18. 흥○○)
4. 진단서 사본(1988. 세일병원장)
5. 요양결정결의서 사본(1988. 6. 30. 부산지방노동청장)
6. 출장복명서(1988. 6. 27. 정○○, 정○○)
7. 재해조사복명서(1988. 6. 28. 정○○)
8. 문답서(강○○, 박○○, 우○○, 김○○, 김○○)
9. 기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철강(주) 근로자로 근무하던중 1988. 5. 21. 15:00경 작업장에서 교육을 받다가 해안가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트럭에서 냉동생선 한 박스를 가지고 작업장에 돌아오다가 작동중이던 기계에 우측발등이 절단되어 상병명 “우측부 압괴 마멸창(절단상태, 즉근골간 관절부 이하)”으로 세일병원에서 요양중인 자로서 원처분청에 요양신청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피재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작업장이 아닌 해안도로에 있는 트럭에서 생선박스를 가지고 온 것은 업무에 수반하는 필연적 또는 합리적 행위가 아니고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의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작동 중인 회사내 기계에 의하여 피재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조장 박○○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청구인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조장 우○○도 지시한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조장 박○○이 지시하여 생선을 가져 왔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조장 박○○의 지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3~4번 정도 생선을 가져와서 먹은 적이 있다고 조장 우○○이 진술하고 있으며 피재 당일에도 조장 박○○이 교육 중에 있는 조장 우○○과 청구인을 불러서 생선을 썰라고 하였다고 조장 박○○이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잘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생선을 가져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생선을 가져와 먹은 일이 조장 박○○과 조장 우○○ 참석하에 통상 이루어졌으며 피재당일 청구인은 교육을 받고 있었음에도 조장 박○○이 불렀기 때문에 교육이 중단된 것이며 청구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신입피교육중인 사원으로서 상사의 신입과 인정을 받기 위하여 생선을 가져왔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상사의 신입과 인정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신입사원인 청구인이 상사의 아무런 지시 없이 더욱이 교육진행중에 임의로 이탈하여 작업장에서 200미터나 되는 거리에서 무게가 20키로그램이나 되는 생선을 가져왔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채용된지 1개월 10일 밖에 되지 않는 신입사원으로서 생선을 가져와 먹은 일이 통상 이루어지고 있었던만큼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피치 못할 입장에 있었다고 인정되며,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조장 우○○은 교육이 중단되었을시는 기계작동을 중지시켜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교육지도를 한 조장 우○○이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한 사업주의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